



제417회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라디오·데이터PP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등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050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라디오·데이터PP등에 대한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안 제2조제3호 등)	2
2.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대한 재송신 승인제 폐지(안 제78조제4항)	18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6. 27.

다. 회 부 일 : 2024. 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라디오·데이터PP등에 대한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안 제2조제3호 등)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¹⁾) 중에서 방송 중 VOD PP, 라디오PP 및 데이터PP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제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완화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①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3억원 이상, ②주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 ③ 유사채널명을 사용 금지의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과기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데이터PP는 「방송법」상의 등록 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1) Program Provider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放送事業者”라 함은 다음 각목의 者를 말한다.	3.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放送채널使用事業者 :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u>登録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者</u>	라. ----- ----- ----- <u>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u>
마. (생략)	마. (현행과 같음)
4. ~ 27. (생략)	4. ~ 27. (현행과 같음)
第9條(허가·승인·등록 등) ① ~ ④ (생략)	第9條(허가·승인·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放送채널使用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登録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u>	⑤ <u>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1.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

현행	개정안
<u>신고를 하여야 한다.</u>	<u>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u> <u>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u> <u>2. 다음 각 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u> <u>가.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u> <u>나.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u>
⑥ ~ ⑪ (생략) <u><신설></u>	⑥ ~ ⑪ (현행과 같음) <u>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u>허가·승인 및 등록</u>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⑬ ----- 제12항----- ----- <u>허가·승인·등록 및 신고</u>----- ----- -----.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 제9조제5항제1호----- ----- -----. 1. ----- ----- <u>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현행	개정안
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구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추 3. 4.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제18조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제13조제3항제2호 또는 제	-----. 2. ----- 말한다. 이하 같다), 부조정실----- 말한다. 이하 같다), 종합편집실----- ----- 말한다. 이하 같다) 및 ----- 3. 4.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 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3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구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추 3.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결격사유) ① ----- -----. 1. (현행과 같음) 2. -----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제3항제2호 또

현행	개정안
3호에 해당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 7. (생략) 第15條(變更許可등) ①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다음各號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登録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準用한다. 1. ~ 7. (생략) ②·③ (생략)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등)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	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된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등 <u>등록 또는 신고를</u> ----- -----. 1. ~ 7. (현행과 같음) 第15條(變更許可등) ① ----- ----- ----- 변경하려는 ----- ----- 받 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 ----- 제10항, 제11 항 및 제12항-----.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등) ①----- ----- ----- ----- ----- ----- -----

현행	개정안
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u>얻어야</u>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u>등록</u>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 ⑤ (생략)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u>허가·승인 또는 등록</u>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u>허가·승인 또는 등록</u>의 취소, 업무정	----- ----- ----- ----- ----- <u>받아야</u> -----. ----- <u>등록</u> <u>또는 신고</u>를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u>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u>를 ----- ----- ----- ----- -----. ----- ----- ----- ----- <u>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u>-----

현행	개정안
지,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하지 아니한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許可·變更許可·再許可</u> 를 받거나 <u>승인·변경승인·再承認</u> 을 얻거나 <u>登録·變更登録</u> 을 한 때	1. ----- <u>허가·변경허가·재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재승인</u> 을 받거나 <u>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에 의한 <u>許可</u> 를 받거나 <u>승인</u> 을 얻거나 <u>登録</u> 한 날부터 2年 이내에 放送 또는 事業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 <u>허가 또는 승인</u> 을 받거나 <u>등록 또는 신고</u> ----- -----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u>변경등록</u> 을 하지 아니한 때	6. ----- ----- <u>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u> ---
7. ~ 13. (생략)	7. ~ 1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u>등록</u>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등록</u> 을 취소할 수 있다.	③ ----- ----- <u>등록 또는 신고한</u> ----- ----- <u>등록 또는 신고수리를</u>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u>허가·승인</u> 또는 <u>등록</u> 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⑤ ----- ----- <u>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u> ----- ----- <u>하지 아니하는</u> ----- ----- -----

현행	개정안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① ~ ③ (생략) ④ <u>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登錄을 한 주된 放送分野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u> ⑤ <u>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⑥ ~ ⑪ (생략) 第99條(是正命令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是正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이 법 또는 <u>許可條件・承認條件・登錄要件</u>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생략) 第101條(聽聞)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 -----.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u> ----- ----- -----. ⑤ ----- 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 ----- -----. ⑥ ~ ⑪ (현행과 같음) 第99條(是正命令등)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 또는 신고수리요건</u>----- ② (현행과 같음) 第101條(聽聞) ----- -----

현 행	개 정 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에 따른 許可・승인 또는 登録을 취소하는 경우	2. -----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19. -----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 ----- 등 록 또는 신고한 -----.

나. 검토 의견

○ 현행 「방송법」(이하 “법”) 제9조제5항²⁾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법 제2조제1호³⁾에서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것으로

2) 「방송법」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⑤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 PP는 이러한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이
동멀티미디어방송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
음.⁴⁾

- 현재 PP는 TV, 라디오, 데이터PP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등록제
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 실시간 TV를 제외한 VOD
·라디오· 데이터PP에 대해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완화하려는
취지임.

< PP 규제 완화 내용 >

방송종류		현행	개정안
TV	실시간	등록	등록
	VOD	등록	신고
라디오		등록	신고
데이터		등록	신고

주: VOD는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를 말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년 3월 기준 등록PP에 따른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텔레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
의 정보체계를 말한다)을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
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
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 4) 과기부에 따르면, 이 중에서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경우 PP사업이 존재하지 않음.

비전PP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TVN, M-net, OCN, ENA 등 209개(VOD 7개 포함)이고, 라디오PP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리랑 라디오, Digital Radio Kiss 등 6개이며, 데이터PP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코러스 노래방, 한국경제DTV등 16개임.

< 등록 PP 유형별 현황 및 사업자 예시 >

구 분	사업자 수	채널 수	예시
텔레비전 PP	209개 ※ VOD 7개	314개	TVN, M-net, OCN, ENA
라디오 PP	6개	123개	아리랑 라디오, Digital Radio Kiss
데이터 PP	16개	22개	코러스 노래방, 한국경제DTV

주: 2024년 3월 기준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에 따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신고 요건을 살펴보면, ①자본금 요건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되고, ②방송시설 요건의 경우 현재 부조정실이 필수시설요건에서 제외되며, ③사무실을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사라지는 효과과 있음.

<개정안 신고 요건 비교>

요건	등록제 (법§9조의2①항)	신고제(개정안) (법§9조의2②항)	규제 완화 필요성
자본금	5억	3억	VOD·라디오·데이터 PP는 TV PP에 비해 영세한 사업자가 일반적

요건	등록제 (법§9조의2①항)	신고제(개정안) (법§9조의2②항)	규제 완화 필요성
방송 시설	주조정실 부조정실 종합편집시설 송출시설	주조정실 - 종합편집시설 송출시설	스튜디오 제작 현장 조정을 위한 부 조정실은 필수요건으로 볼 수 없음
사무실	보유	-	종합 편집실을 사무실로 겸용 가능
채널명	유사채널명 사용 금지	유사채널명 사용 금지	기존 요건 유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에 대해서는, 라디어·데이터PP 등 텔레비전PP에 비해 규모가 적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별도 제작시설 등이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형태이므로 텔레비전PP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OTT나 IPTV 분야의 콘텐츠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OTT 콘텐츠는 별도의 규제 없이 공급이 가능하고, IPTV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5)에 따라 비실시간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과기부장관에게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①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는 누구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라디오·데이터PP가 진입규제가 없는 OTT와 경쟁할 수 있도록 라디오·데이터PP부터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데이터 PP의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은 신설 당시 법 소관 부처가 상이하였으나⁶⁾, 현재 데이터PP와 부가통신사업의 소관 부처가 과기부로 동일하므로 중복 규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과기부는 이에 대해, “데이터방송”의 정의가 「방송법」에 신설('04년)되는 과정에서 당시 방송위원회는 데이터방송은 방송에 해당하므로 「방송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정보통신부는 데이터방송은 통신에 해당하므로 「방송법」에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대립하였고, 지상파 DMB의 신규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당시 국회(과방위)는 양 부처를 불러 데이터방송을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모두 규정하도록 조정하였으나, 이후 여러 차례 정부조직 개편을 거쳐, 현재 일반 데이터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 모두 과기정통부 관장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중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사라진 것이라고

6) 조문 신설당시인 2004년에는 「방송법」은 방송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부가 소관하였음.

설명하였음.

- 다만, 안 제9조제5항제2호가목은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로 라디오PP와 데이터PP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향후 방송의 정의가 추가되거나 변경됨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신고대상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라디오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와 “데이터방송을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第9條(허가·승인·등록 등) ① ~ ④ (생략) ⑤ <u>放送채널使用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u>	第9條(허가·승인·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u>	第9條(허가·승인·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u>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2. 다음 각 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 가.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나.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2. 다음 각 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 가. 라디오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나.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u>을 하려는 경우</u>	<u>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u>

- 종합해보면, VOD·라디오·데이터PP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PP들이 진입규제가 없는 OTT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및 안 제9조제5항제2호가목의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에 따른 수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대한 재송신 승인제 폐지(안 제78조제4항)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는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텔레비전 방송만 해당하도록 개정하여, 지상파 라디오 방송을 동시재송신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폐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동시재송신”이란 KBS의 지상파방송 및 EBS의 텔레비전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을 말함.⁷⁾

현행	개정안
第78條(再送信) ① ~ ③ (생략)	第78條(再送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u>지상파방송</u> 동시재송신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 ----- ----- <u>지상파방송(텔레비전 방송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7) 「방송법」 제78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 「방송법」(이하 “법”) 제78조제4항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기 위해서는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 중에서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경우 종합유선방송사 및 중계유선방송사의 역외 재송신승인제(제78조제1항제1호)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재송신승인제(제78조제1항제호) 대상에서 라디오방송은 제외됨.
- 과기부는 이용자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라디오방송의 재송신승인 폐지에 대하여 한국방송협회는

8) 「방송법」 제78조(재송신)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해당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2.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의 해당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은 제외한다)

방송법 다수의 조항에서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텔레비전방송과 구분하여 라디오방송의 역외재송신을 분리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역외재송신 지역방송과 역내 동시재송신하는 지역방송 간 무분별한 경쟁만 부추겨 지역방송의 지역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임.

- 종합해보면, 지상파 라디오방송의 재송신승인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입법 취지와 지역방송 간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한국방송협회의 신중 검토 의견을 함께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226
